

2014~2016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취학권역 행정예고 제출 의견 처리 결과

1. 목 적

2014~2016년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가능 취학권역(안) 행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에 대해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의 4에 의거 그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리고자 함

2. 의견처리내용

의견구분	주요제출 공통의견	제출의견 처리내용
반대 공통의 견	취학요구조사의 대상과 내용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취학수요조사는 유아교육법시행령 제17조의 2(유치원의 취학 수요조사)에 따라 법령을 준수하여 지난 2013.10~2013.11 기간 동안 군산시 취학권역에 거주하는 만0세~만4세(출생일 2008.1.1.~2012.12.31.) 영유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자녀가 취학을 선호하는 유아교육·보육기관(어린이집포함)이 어디인지에 관해 전화 설문 조사하였음
	설립인가 가능 취학권역 설정의 근거 및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취학권역 설정은 유아수용계획 협의회(2013.8.7.) 결과, 군산시 동지역은 취원예정 아동수 6,000명 내외 기준으로 2개 권역, 면지역은 취원예정 아동수 500명 내외 기준으로 2개 권역으로 설정되었으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행정예고[군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13-148호]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설정하였으며, 취학수요조사 결과를 근거로, 권역 내 사립유치원의 취학수요가 전체 정원을 초과한 경우 설립 인가 가능 권역으로 설정되었음
	유아수용조사자료 공개요함	유아수용조사 자료 공개는 타 법령에 의하여 정보공개 결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행정예고 의견 제출에 따라 공개 할 수 없음

의견구분	주요제출 공통의견	제출의견 처리내용
	현재 운영중인 사립과 공립의 원아수를 바탕으로 유아 배치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취학수요조사시 학부모선호도만으로 실시해서는 안됨 (기타 취학수요조사방법 반대의견)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는 유아교육 직접 수요자의 선호를 파악하여 수요자 중심의 유아수용계획수립을 위하여 실시하였으며, 유치원 취학수요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바에 의거하여 실시하였음.
	4권역 유아수용계획 반대함.	4권역의 경우 취학권역 내 사립유치원 취학 수요가 전체 정원을 초과한 경우로 설립 인가 가능 권역으로 설정되었으나, 최종 설립 인가를 위해서는 유아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과 학교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각종 법령 검토에 따라 최종 인가가 결정됨
	국공립 설립계획(2015~2017) 있는지?	현재까지 2015~2017 국·공립 유치원의 구체적 설립계획은 없으며, 2권역에 유아수용계획 수립 전 학교설립계획에 의하여 신설 중인 단설 공립유치원이 2015년 3월 개원 예정임

3. 제출의견 및 처리결과

가. 의견수렴 사항

- ❖ 제출의견 13건

나. 처리결과

- ❖ 제출 의견에 대한 개인별 답변서를 서면으로 통지(우편)
- ❖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가능 취학권역 설정(안)은 원안대로 추진하되, 향후 유아수용계획 수립 시 취학수요조사의 대상 및 방법과 조사결과 공개 여부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2014. 08. 07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